

20세기 초 조선 지식인의 예치론(禮治論)* -전병훈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이대승 HK연구교수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병훈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20세기 초 동서의 사유가 접변하던 시기에 조선 지식인의 ‘예치(禮治)’에 대한 시각을 탐색했다. 전병훈은 구한 말에서 일제강점기 기간에 조선과 중국 북경에서 활동한 조선 지식인이다. 중국 북양 군벌 시기에 북경에서 활동하던 전병훈은 동서의 정신철학, 심리철학, 도덕철학, 정치철학 사상을 융합한 『정신철학통편(精神哲學通編)』(1920)을 저술했다. 그는 「정치철학」편에서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예치’는 서구가 본받아야 할 정치 제도이자 도래할 미래에도 수행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동아시아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전병훈의 정치철학에서 예치는 크게 두 층위를 지닌다. 하나는 『주례』의 ‘독법규칙’을 사례로 제시한 ‘주공의 예치’다. 이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시대에 따라 변통 가능한 예법(禮法)으로서의 예치로, 성왕군주의 교화(敎化)를 통한 풍속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유교 전통의 자장에 속해 있는 예치이다. 다른 층위의 예치는 ‘공화 헌법의 예치’다. 이는 동서의 정치철학 사유가 조제된 결과 새롭게 해석된 예치로서 공화, 민주, 헌법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 전병훈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예치는 인민들의 뜻과 인민들 상호 계약에 따라 법적 절차가 규정된 예치로서, 주권을 가진 개개인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사회 질서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전병훈, 『정신철학통편』, 정치철학, 동서 조제, 예치, 공화 헌법의 예치.

I. 머리말

전통시기에 유교 문화의 주요 정치 제도로서 기능해 온 예치는 군주제의 신분 질서하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전통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입헌주의 등의 근대 정치 제도와 다르다. 양자 사이에는 군주제와 민주주의, 백성과 공민 등 제도와 사유 측면에서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중국 고대 정치 관념에서 근대 정치 관념으로의 전환을 ‘군주 전제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전환’ ‘신민(臣民) 의식으로부터 공민(公民) 의식으로의 전환’ ‘성인 숭배 관념으로부터 자유 관념으로의 전환’ 세 가지로 정리한 류택화의 분석은 고대와 근대 정치 체제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준다.¹⁾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의 예치는 사라지고 대신 법치가 기본적인 사회 제도로 자리한 채 사회 속에서 행해야 할 개인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법치는 현대 사회에 필수적 요소이지만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1) 류택화 쓰고 엮음. 2019. 『중국정치사상사』 1, 장현근 옮김. 글항아리. 7쪽.

이 때문에 그간 학술계에서는 국가의 기강은 법치와 예치가 함께 요청된다는 시각 하에 법치사회와 예치국가를 논하기도 하고,²⁾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안정시키고 순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천적 관심에 따라 전통 예교와 시민 윤리를 논하기도 하며,³⁾ 현대 사회에서 유교의 예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시각에서 유교의 예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도모해 왔다.⁴⁾

그간 다양한 측면에서 유교의 예에 대한 해석을 도모해 왔지만, 근대 정치제도가 정착된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이 끊어진 유교 예치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나아가 근대 사회계약론, 입헌주의, 공화주의 등의 현대 정치철학의 사유가 공동체 가치와 삼강오륜의 윤리를 중시하는 동아시아 전통의 예치와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은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이다. 더불어 효제를 근간으로 한 가부장제 종법제도의 신분 사회에서 기능해 온 예치를 남녀노소 모든 개인이 평등한 현대 사회에 다시 소환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일 수 있다는 시각 또한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현대 법치주의가 보이는 한계로 인해 정치철학과 사회철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교의 예치가 소환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 예치가 법치를 보완할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전통시기 예치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아시아 지식인이 민주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 등과 같은 서양의 정치철학을 접할 때 기존 유교 문화 체제 속에서 기능하던 '예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탐구하기 위해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서접변기의 조선 지식인 전병훈의 사례를 주목하고자 한다.

전병훈은 구한 말에서 일제강점기 기간에 조선과 중국 북경에서 활동한 조선 지식인이다. 유학자로서 전병훈은 이항로(李恒老, 1792~1868) 문인인 박문일(朴

2) 황경식. 2017. 『법치사회와 예치국가』, 철학과 현실사. 5쪽.

3) 한형조 외 지음. 2001. 『전통 예교와 시민 윤리』, 청계. 7쪽.

4) 한도현 외 지음. 2004. 『유교의 예와 현대적 해석』, 청계; 이승환. 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 출판부.

文一, 1822~1894)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하고, 1907년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존도재 64곳을 구축해 천여 명에 달하는 선비를 양성했다. 함경북도 부령군 군수직을 수행하던 1907년, 전병훈은 이해 7월에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 폐위되자 10월에 조선을 떠나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도교 수련을 통해 참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고, 북양군벌 시기에 북경에서 활동하며 동서 사상을 융합한 『정신철학통편(精神哲學通編)』(1920)을 완성했다.⁵⁾

『정신철학통편』에서 전병훈은 정신철학, 심리철학, 도덕철학, 정치철학을 논한다. 이 가운데 ‘예치’는 정치철학을 다룬 「정치철학」편에서 다뤄진다. 전병훈은 「정치철학」에서 동아시아와 서구의 정치사상을 다루는데, 그 과정에서 동서사유를 융합하는 자신만의 정치철학적 통찰을 제시한다. 전병훈이 자신의 정치철학 속에서 동아시아 정치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예치’다. 그는 예치를 동아시아의 구시대의 정치 제도로 한정하지 않고, 미래 사회에서 실행할 동서융합의 정치제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새롭게 정초한다. 그 과정에서 전병훈은 동서 정치철학을 조제(調劑)하여 도래할 새 시대의 제도로서 ‘공화 헌법의 예치’를 말하고 있다.

전병훈에 대한 연구는 80년대에 들어서 연구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인물, 저술, 그리고 사상과 관련하여 도가·도교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최근에는 전병훈 개인과 사상 전반에 대한 연구서와 『정신철학통편』의 완역서 등이 출간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병훈의 철학에 대한 전문적 탐구와 근대 동아시아 지성사 측면에서 전병훈 사상에 대한 탐구는 소략한 편이다.⁶⁾ 그

5) 김성환. 2016. 『우주의 정오』, 소나무. 1081쪽, 1101~1105쪽 참조.

6) 전병훈은 일찍이 박종홍에 의해 근대사상가로서 소략하게 소개되었고, 1983년 명문당에서 『정신철학통편』 간행 시 금장태에 의해 “한국철학사 내지 종교사·사회사상사에 있어서 근대적 전환과정상의 중요문헌”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80년대에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방면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전병훈에 대한 선행 연구와 관련하여 이대승. 2022. 「20세기 초 조선 지식인의 동서양 심(理)학 융합의 방식-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 「심리철학」 분석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인간이해』, 흐름. 28~29쪽 참조. 참고로 전병훈에 대한 전문 연구서로 김성환. 2016. 『우주의 정오』, 소나무., 완역서로는 임채우. 2021. 『완역 정신철학통편』, 인월담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외 동아시아 지성사 연구로서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 분석을 통해 서양식 교육을 받지 않은 조선 지식인의 서양서적 독해방식을 규명한 소진형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소

가운데 전병훈의 '예치' 관련한 연구는 김성환에 의해 일찍이 다뤄진 바 있다. 김성환은 '예치는 민주·공화와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요·순과 하·은주 삼대의 예치에 대한 전병훈의 정치철학 독법을 개괄적으로 다루었다.⁷⁾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면서 전병훈이 제시한 '예치'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그 의미 탐색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정치철학」 편집체제를 통해 전병훈이 정치철학의 구상과 그 속에서 '예치'가 차지하는 위치를 조명한다. 3장에서는 전병훈이 동아시아 예치의 사표로 여기면서 제시한 '주공의 예치'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을 살핀다. 4장에서는 전병훈이 고대 정치철학의 특징으로 제시한 '공화 헌법의 예치'의 의미를 탐색하고, 맺음말에서는 이상을 종합 정리한다.⁸⁾

II. 전병훈 「정치철학」의 구성과 '예치'

『정신철학통편』은 내용상 크게 「정신철학」 「심리철학」 「도덕철학」 「정치철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파트는 대개 서론(서언), 본문, 총론(총결론) 구조로 되어있다. 전병훈은 「정신철학」, 「심리철학」, 「도덕철학」 편 서언에서 정신, 심리, 도덕이 하늘로부터 근원한다고 말한다.⁹⁾ 정신·심리·도덕이 하늘로부터 유래한다는 선언

진형. 2022. 「조선 지식인의 서양 번역서 독해방식: 전병훈 『정신철학통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70.

7) 김성환. 2016. 「예치는 민주·공화와 만날 수 있는가?—요·순·삼대의 예치에 대한 전병훈 정치철학의 독법」, 『동북아 문화연구』 47(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이 연구는 내용이 보완되어 2016년에 출간된 『우주의 정오』 제6장 「정치철학」에 수록되었다.

8) 이 글에서 사용하는 『정신철학통편』 원문은 1983년 간행된 명문당 영인본을 저본으로 한다. 전병훈 저. 1983.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참고로 필자는 차후 출간 예정인 김성환 교수의 『정신철학통편』 번역서 교감작업에 참여한 인연으로, 번역에 있어 김성환 교수의 출간 예정 번역서 도움을 받았다.

9) 「精神哲學通編·緒論」, “精神, 原天也.”, 「心理哲學·緒言」, “心理, 原天也.”, 「道德哲學·緒言」, “道德, 原天也.”

은 전병훈 철학의 토대가 사람의 본래 성품이 하늘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동아시아 사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치철학」편 서론에서는 “도덕은 하늘에서 근원하며, 정치제도는 땅에 근본을 둔다”¹⁰⁾라며 정치철학은 정신·심리·도덕 철학과 달리 땅에 바탕한 것임을 선언한다. 이는 정치란 “지상에서 군집을 이루는 사회적 인간의 외적 질서의 영역”으로 “땅에 근본을 둔” 것이며, 또 본질적으로 정치는 “대지와 대지에 깃든 모든 존재의 안녕을 돌보는 일”임을 나타낸 언사라 할 수 있다.¹¹⁾

전병훈은 「정치철학」에서 동서고금의 정치에 대한 사유를 종합하여 다루는데, 서론과 총결론을 제외한 본론은 총 3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세계 통일 공화정부 헌법’이 덧붙여져 있다. 각각의 장 순서와 제목은 아래 표와 같다.¹²⁾

구성			장 순서와 제목
동아시아 정치철학	중국	유가 (유교)	1장 민익에 따라 나라를 열고 도읍을 세워 민을 안정시킨 철리[從民意開國立都以安民之哲理]
			2장 요순의 선양 또한 민의[堯舜之相禪亦民意]
			3장 (하은주) 삼대의 천하 세습이 민의를 따르고 또 민을 경외한 철리[三代之家天下從民意而亦畏民之哲理]
			4장 요순 책임제 철리[堯舜責任之制哲理]
			5장 우가 물과 땅을 다스리고 주를 나누고 정전을 구획하여 황제의 구정법을 실행한 철리[禹平水土，畫州井田，實行黃帝邱井法哲理]
			6장 이윤이 다섯 번 텅에게 나아가고 다섯 번 갈에게 나아간 철리[伊尹五就湯五就桀之哲理]
			7장 옛적에 임금과 스승의 책무가 나누지 않은 것 역시 天意였던 철리[古者君師之責未分者亦天意之哲理]
			8장 주공이 공화 헌법으로 다스린 철리[周公共和憲法治之哲理]
			9장 주공이 예치로 형벌을 40년 동안 쓰지 않은 철리[周公禮治刑措四十年不用之哲理]
			10장 학교 교육과 인재 선발 제도의 철리[學校教育賓興之制哲理]
			11장 형벌로 교화를 돕고, 형벌은 형벌 없음을 기약해 형벌을 두고도 쓰지 않음에 이르는 철리[刑以弼教，刑期于無刑可致刑措哲理]

10) 「政治哲學·緒論」, “道德源於天, 政制本乎地也.”

11) 김성환. 2016. 「예치는 민주·공화와 만날 수 있는가?—요·순·삼대의 예치에 대한 전병훈 정치철학의 독법」, 『동북아 문화연구』 47(1). 195쪽.

12) 각 장에 따라 제목에는 “(二十四條)禹平水土，畫州井田，實行黃帝邱井法哲理”，“(二節)康德設一民主國于宇內永久太平哲理”에서 ‘(二十四條)’나 ‘(二節)’와 같이 각 장의 구성을 표시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구성에 대한 것이기에 생각하고 본 표에서는 내용과 관련된 제목만 표기하였다. 더불어 표 원편의 ‘구성’ 부분은 본론의 내용을 필자가 구분하여 기술한 것이다.

20세기 초 조선 지식인의 예치론(禮治論): 전병훈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구성			장 순서와 제목	
			12장	주례 관직 임명제의 철리[周禮任官之制哲理]
			결론(結論)	
			13장	공자 또한 공화제의 공심을 위주로 한 철리[孔子亦主共和制之公心哲理]
			14장	공자가 대동의 지극한 정치를 논함[孔子論大同之至治]
			15장	『대학』 「평전하」 장 혈구의 법의 평등 철리[大學平天下章契矩之法平等哲理]
			16장	정치로 외교를 조제한 자산의 철리[子產爲政調劑外交哲理]
			17장	民産을 제정하고 정전을 논한 맹자의 철리[孟子制民産論井田哲理]
			18장	맹자가 민권을 논한 철리[孟子論民權哲理]
			19장	한대부터 명대까지 정치 및 수령의 치적 철리[漢明政治并吏治哲理]
			20장	왕양명의 십가패법[王陽明十家牌去]
			21장	필부도 책무가 있다는 고정림의 철리[顧亭林匹夫有責之哲理]
			결론(結論)	
	도가 (도교)	22장	도가 정치 철리[道家政治哲理]	
		23장	도가 정치가 민주제에 부합하는 철리[道家政治合於民主制哲理]	
		24장	전쟁의 참화를 논한 노자의 철리[老子論兵禍之哲理]	
		25장	대도의 작용이 대일통을 이룸을 논한 노자의 철리[老子論大道之用成大一統之哲理]	
		26장	세상 다스림이 융성한 사람은 장생할 수 있다고 말한 노자의 철리[老子言世治隆熙人能長生之哲理]	
		27장	천하는 다투지 않은 정치를 즐겨 받든다고 말한 노자의 철리[老子言天下樂推不爭政治哲理]	
	한국	28장	조선의 기자가 황극을 세운 철리[朝鮮箕子建極哲理]	
		29장	조정암의 정치 철리[趙靜菴政治哲理]	
		30장	군주는 백성을 형제로 여긴다는 율곡의 정치 철리[栗谷政治人君以民爲兄弟之哲理]	
서구 정치철학	고대 근세	31장	서구 정치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歐西政治哲學亞里士多德論]	
		32장	서구 사회계약[民約] 정치의 철리[歐西民約政治哲理]	
		33장	서구 불문철리의 지방자치론 철리[歐西伯倫知地方自治論哲理]	
		34장	애덤 스미스 국부론의 재정관리[理財] 철리[斯密亞丹原富理財哲理]	
		35장	몽테스키외 삼권분립[三政鼎立]의 정치 철리[孟德斯鳩三政鼎立之治哲理]	
		36장	세계에 통일 민주국가를 세워 영원한 태평을 이루자는 칸트의 철리[康德設一民主國于宇內永久太平哲理]	
	최근	37장	서구 최근 정치철학[歐西最近政治哲學]	
세계 통일 공화정부 헌법[世界一統共和國政府憲法]				

본론은 크게 동아시아(1~30장)와 서구(31~37장)의 정치철학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동아시아 정치철학은 내용상 중국 유가(1~21장)·도가

(22~27장)와 한국(28~30장)의 정치철학, 그리고 서구는 고대(31장), 근세(32~36장), 최근(37장)의 정치철학으로 나뉜다.

동아시아 정치철학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단연 중국 유교의 정치철학이다. 전병훈은 동아시아 정치를 주공 이전과 주공 이후로 구분하여 각각에 결론을 두고 있다. 이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지칭해보면, 전반부에서는 주공 이전까지 고대 시기의 정치 체제와 규범에 대해 다루는데, 전병훈은 이 시기에 군주들이 민의를 중시하며 인민들과 함께 정치를 행했다고 평하고, 주요 정치제도로써 정전제, 덕치, 예치 등을 다룬다.¹³⁾ 후반부에서는 공자, 맹자부터 명대 왕양명과 청대 고염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인물들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동아시아 정치철학과 제도를 논한다.¹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병훈이 동아시아 정치를 주공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는 점이다. 그는 “복희·황제·요·순에서 주공에 이르는 예치”는 “경험한 사실”이었다고 여긴지만, “공자와 맹자의 정치학의 경우 이론으로 후세에 전하는 교훈”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맹자에서 지금까지는 설령 ‘정치학이 없었다’라고 해도 크게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고 말한다.¹⁵⁾ 이는 전병훈이 주공 이후 동아시아 정치는 전제정치가 행해졌지만, 요·순부터 하은주 삼대의 정치제도는 ‘민주제’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민 의(民意)를 위주로 한’ 정치가 행해졌고, 인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공화 헌법의 예치’가 행해졌다고 여기기 때문이다.¹⁶⁾

전병훈이 중국 유교 정치철학 파트에서 주로 거론하는 내용은 근대 정치 제도

13) 전병훈 저, 1983.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253~282쪽.

14) 상동, 282~296쪽.

15) 「政治哲學」, 「結論」(21~22장 사이), “東亞之政治學. 自義黃堯舜, 以至周公之禮治, 則如上所述, 是乃經驗之事實也. 至若孔孟之政治學, 則理論之垂訓者, 非所謂經驗者也. 雖然, 自孟子以至於今, 雖謂之無政治學, 恐非過論也.” 상동, 294쪽.

16) 「政治哲學」, 「緒論」, “惟東亞之政治制度, 自堯舜歷夏商而至周, 始乃粲然大備, 皆以民意爲主. 雖謂之民主制, 恐無不可也. … 論世之士, 或以堯舜三代, 指爲君主之治, 殊不知堯·舜·周公, 皆聽民爲政, 以立共和憲法之禮治, 啓萬世之道德文明之祖法者也.” 상동, 250~251쪽.

인 민주제, 공화제, 입헌제에 부합하는 내용, 그리고 서구가 본받을 만한 정치제도로서 동아시아의 정전제와 덕치·예치이다. 도가·도교 정치철학에서는 유교와 유사하게 민주제와 부합하는 내용 등을 거론하지만,¹⁷⁾ 도가·도교만의 특징적인 사항으로 세상을 융성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장생한다며, 유교의 성왕군주론에 도교의 신선론을 결합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¹⁸⁾

한국의 정치철학에서는 주요 인물로 고대의 기자, 조선의 세종, 조광조, 율곡, 유형원, 정약용 등을 거론하는데, 주로 인용되는 내용은 중국 유교 정치철학과 마찬가지로 민주, 공화, 입헌, 정전, 군산, 덕치, 예치 등이다. 다만 중국이 주공 이후 정치학이 없었다라고 평가한 것과 달리, 조선에서는 정전, 군산, 덕치, 예치가 흥성하고 전문적이고 특색있는 정치학 내용을 개척했다고 본다.¹⁹⁾ 전병훈은 “주공의 덕치와 예교로 주나라의 태평성대가 8백 년간 흥성”했는데, “세종대왕이 기틀을 잡은 조선왕조 5백 년의 국운 역시 이와 같았”다며, 주공의 예치가 조선에서 흥성했다며 조선의 정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²⁰⁾

전병훈은 조선에서 유학자로서 활동하다 중국으로 건너가 도가·도교 수행을 통해 참자유의 경지에 이른 인물이다. 그런만큼 동아시아 정치철학을 논함에 있어 중국의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도교, 나아가 한국의 정치철학적 사유까지 폭넓게

17) 제23장 제목인 ‘도가정치가 민주제에 부합하는 철리[道家政治合於民主制哲理]’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18) 『政治哲學』, ‘第二十六章. 老子言世治隆熙人能長生之哲理’에 관련 내용이 다뤄진다.

19) 가령 세종은 ‘참된 성인’으로서 당시 문물 제작의 번성함과 예치의 교화는 진실로 “동주 이래 일찍이 없었던 지극한 정치”라 평가하며, 천지 사이에 『주례』의 관혼상제 문물의 아름다움, 뚜렷한 윤리와 덕례의 아름다움은 “오직 조선에만 보존된 것”이라고 말한다. 또 유형원의 『반계수록』은 “『주례』 이후 동아시아에서 처음 출현한 정치 전문서”이고, 정약용의 『방례초본』 역시 “전문적인 정치학”으로 이러한 정치서는 군산의 어진 마을에서 나온 것이라 평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에서 현자, 성인과 달통한 선비들이 배출됐고, 동아시아에서 특색 있는 정치철학을 처음 개척했다고 말하며, “주공의 덕치와 예교로 주나라의 태평성대가 8백 년간 흥성”했는데, “세종대왕이 기틀을 잡은 조선왕조 5백 년의 국운 역시 이와 같았다”라고 평가한다. 전병훈 저. 1983.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307~317쪽.

20) 『政治哲學』, ‘제30장’, “東韓之賢聖通儒輩出, 著述至多. 至若政治學專家, 則誠東亞之初開特色者也. 何可以其國之興廢, 遂疑其學術哉? 欽惟, 周公德禮之化, 延祚八百之盛, 而李世宗五百運之邦命, 亦猶是焉.”

논한다. 반면 서구 사상의 경우 당시 중국과 일본을 통해 들어온 번역서를 통해 정치철학을 이해한 만큼, 전병훈의 서구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다. 이러한 제한에도 그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에서부터 근세 루소의 사회계약론, 블룬칠리의 지방자치론,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 칸트의 영구평화론, 그리고 19세기 전후 독일 라트겐의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이후 '세계통일공화정부헌법'을 마지막으로 본론을 마치고 있다.²¹⁾

서구 정치철학 파트에서 주로 언급된 내용은 민권, 민주, 공화, 헌법, 지방자치, 삼권분립, 도덕 등과 관련된다. 일례로 전병훈은 라트겐을 최근의 정치학 대가로 평가하면서, “그 이론에 핵심적인 내용이 많지만 나는 공화, 도덕의 정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취할 뿐”이라고 말하고, 그의 정치학은 “각국 정치의 개요를 뒤섞어 말하지만, 그래도 대개 도덕을 골간으로” 하며, 그밖에 학교 교육, 관리 임용, 법학 등 제 분야의 전문지식을 모두 진술할 수는 없기에 “단지 공화, 헌법을 게재하는 것으로 그친다.”라고 말하고 있다.²²⁾

총결론에서 전병훈은 동서 정치철학을 정리하면서 동서가 각각 상호간에 취해야 할 사항을 논한다. 그는 자신이 ‘정신철학’ ‘심리철학’ ‘도덕철학’을 엮으면서 동서고금을 조제해서 ‘성스러운 겸한 지극한 철학(兼聖極哲)’을 구성했지만, 정치철학의 경우 우리 동아시아 철학의 결점을 보충할 것이 더욱 많았다고 술회하면서, 동아시아가 서구로부터 “정치, 헌법, 이재, 공업과 상업, 각종 과학”을 배워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서구 역시 동아시아 정치철학의 “정전, 군산, 예치의 조례”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²³⁾ 서론에서 총결론에 이르기까지 전병훈은 대개

21) 전병훈 저. 1983.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317~340쪽.

22) 「政治哲學」, 제37장, “那氏爲最近政治學大家, 其論多肯綮. 然余主共和道德之治, 故只取其相合者而已. …此章混雜各國政治之概要而言之, 然蓋以道德爲主腦也. 外他學校教育之周盡, 任官(非由學術試驗, 不得任官. 由中學卒業後, 再入法科三年, 候補高等官. 又練習二年, 及格者實任.)之詳嚴, 法學及諸科則皆有專門, 非此片幅之所能俱述, 故只載共和憲法而止焉.”

23) 「政治哲學」, “余編精神心理道德, 專以調劑新舊而折衷合致, 俾學以成兼聖極哲, 而若夫政治則

민주, 공화, 헌법 등의 근대적 정치제도를 동아시아가 수용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서구가 동아시아에서 취해야 할 정치제도로 정전제, 균산제, 그리고 예치를 제시한다. 특히 '예치'는 동아시아 정치철학 파트에서 상당 부분에 걸쳐 논의되고, 그 구체적 사례 역시 논해지고 있다. 전병훈에게 '예치'는 서구가 본받아야 할 정치제도이자 도래할 미래에도 수행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동아시아 정치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Ⅲ. 동아시아 정치의 사표(師表), '주공의 예치'

전병훈의 정치철학에서 '예치'는 정전제, 균산제와 더불어 서구가 취할 필요가 있는 동아시아 정치철학의 핵심이다. “예는 국가를 경영하고 사직을 안정시키며, 일반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후사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²⁴⁾라는 『좌전』의 말처럼, '예치'는 예를 통해 개인에서부터 사회,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⁵⁾ 동아시아 유교 전통에서는 예를 통해 개인의 수양과 국가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는데, 전통 시기 예치 혹은 예교의 정립에 큰 영향을 끼친 문헌은 『의례』, 『예기』, 『주례』 삼례서(三禮書)이다.

주지하듯이 『의례』, 『예기』, 『주례』 삼례서는 유가의 예를 집성해 놓은 경서이다. 『예경』으로 불리는 『의례』는 귀족 계층의 사회생활 규범을 기록한 책이다. 현재 서한 초 노나라 고당생(高堂生)이 전한 사례(士禮) 17편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개인 행위의 예절, 가정의 상례와 제례, 군중의 사회활동의 예절, 조정의

尤多可以損益補吾缺點者。如今歐美之政治憲法理財工商各科學是也。然西則必取我井制均產禮治條例，以各進充分圓滿，而一以體天重民爲職志焉，則宇內之永樂和平，大同一統之基本，顧不在此乎？”

24) 『左傳』, '隱公十一年', "禮, 經國家, 定社稷, 序民人, 利後嗣者也."

25) 고영진. 2001. 「조선 시대 예치의 형성과 구조」, 『전통 예교와 시민 윤리』, 청계. 134~136쪽 참조.

예절 등을 수록하고 있다. 『예기』는 예에 대한 다방면의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현재 『예기』로 통용되는 것은 대성(戴聖)이 전한 『소대례기』 49편이다. 이 책에서는 각종 예제에 대한 기록, 의례에 대한 해설, 예의 정신과 가치 등을 기록하고 있다. 본래 『주관(主官)』으로 불렸던 『주례』에서는 주로 주나라의 관직 명칭과 직무 범위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²⁶⁾

삼례서 가운데 『의례』는 주로 개인·가정·사회·조정의 예법, 『예기』는 예의 정신과 가치, 『주례』는 주대의 관직 체제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병훈이 「정치철학」에서 ‘예치’와 관련하여 중시하면서 중점적으로 인용하는 책은 바로 『주례』이다. 그는 「정치철학」편에서 중국 고대부터 청대까지 유가 정치철학을 논하는 총 21장 가운데 전반부 총 12장을 고대부터 시기부터 하·은·주 삼대의 정치 제도와 사상을 다루는 데 할애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총 5장(8~12장)에 걸쳐 『주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대의 예치, 교육과 인재 선발, 관직 제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전병훈이 다섯 장에 걸쳐 주나라의 예치와 제도를 제시한 것은 “동아시아의 정치제도가 요·순으로부터 하·상을 거쳐 주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찬연하게 크게 완비”²⁷⁾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공자와 맹자에 이르기까지의 정치학은 이론으로 후세에 전하는 교훈”으로서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동아시아의 정치학에서 복희·황제·요·순에서 주공에 이르는 예치”는 “경험한 사실”이라고 여긴다.²⁸⁾ 그리고 그가 보기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명화된 ‘덕치’·‘예치’를 펼쳐 형벌을 사용치 않고 멈춘 사람은 오직 주공뿐”이다. 그는 주나라의 기틀을 확립한 주공이 형벌을 사용하지 않고 펼친 ‘덕치’·‘예치’야말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명화

26) 최경욱. 2001. 「예 이념의 전개」, 『인문과학논총』 4. 330~331쪽., 저우허 지음, 노인숙 옮김.
2021. 『예학을 말하다』, 삼화. 153~156쪽, 215~224쪽 참조.

27) 「政治哲學」, 「緒論」, “惟東亞之政治制度, 自堯·舜歷夏·商而至周, 始乃粲然大備.”

28) 「政治哲學」, 「結論」(21~22장 사이), “東亞之政治學. 自義黃堯舜, 以至周公之禮治, 則如上所述, 是乃經驗之事實也. 至若孔孟之政治學, 則理論之垂訓者, 非所謂經驗者也.”

된 도덕 정치라고 보고, 동아시아 정치철학을 논함에 있어 “주공을 사표(師則)”로 삼는다.²⁹⁾

『주례』는 본래 전한(前漢) 시기에는 ‘주관(周官)’으로 불리다가 왕망(王莽) 시기에 ‘주례(周禮)’로 바뀌며 예경의 반열에 오르고, 후한(後漢) 시기에 정현(鄭玄)이 삼례서에 모두 주석을 달면서 ‘주례’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³⁰⁾ 이때 정현은 주공이 『주례』를 지었다는 주장을 제시했고, 이후 역대로 『주례』에 대한 주요 주석가들이 ‘서주 시대 주공 저작설’을 따랐다. 하지만 한대부터 현대까지 『주례』의 저자와 저작시기 여부는 끊임없이 논쟁 중인 사안으로, 저작 시기의 경우 서주 시기에서부터 춘추 전국시기, 그리고 더 늦게는 한나라 초기로 보기도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례』에 서주 시기 주요 제도가 수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전국시기 그리고 한초의 제도와 사상 역시 보이기 때문이다.³¹⁾

『주례』는 역사학, 문헌학 측면에서 저자와 저술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정치철학」의 내용을 검토할 때 전병훈은 전통적인 ‘서주 시대 주공 저작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병훈은 『주례』를 중시하면서 여기에 주공이 확립한 주나라의 관직 제도와 도덕정치 제도가 담겨 있다고 여긴다. 그에게 주공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명화된 ‘덕치’·‘예치’를 펼쳐 형벌을 사용치 않고 멈춘 사람”이며, 『주례』는 형벌을 사용치 않은 덕치·예치의 도덕 정치가 담긴 정치서이다. 이러한 도덕 정치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병훈이 『주례』에서 주목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은 「지관사도」의 지방행정 제도와 관련된다.

『주례』는 국가 제도와 관리의 직무를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천관총재」 「지관사도」 「춘관종백」 「하관사마」 「추관사구」 「동관고공기」로 구성되어 있는

29) 「政治哲學」, ‘結論’(12~13장 사이), “東亞之最文明德禮之至治, 以致刑措不用者, 惟周公而已. 故今編此篇, 以周公爲師則, 將作宇內刑措之曙光者, 乃編者之至願正鵠也. 苟有聖人者起, 意致刑措之治, 則井田民產之制在所先取, 以立基本者也.”

30) 정현 주, 가공언 소, 김용천, 박예경 역주. 2021. 『역주 주례주소』 1, 전통문화연구회. 5~6쪽.

31) 위의 책. 9~13쪽.

데,³²⁾ 천관·지관·춘관·하관·추관·동관·육관 체제는 중앙행정 조직을 천지와 춘하추동 사시의 6상(象)에 따라 직제를 나눈 것이다. 육관의 각 편에서는 서두에 해당 관직과 관장하는 직무의 요점을 총괄 서술하고, 그 아래에 등급에 따른 관직과 직무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천관은 왕국의 정부를 관장하여 왕이 천하를 균형하게 다스리는 것을 보좌하고, 지관은 교육을 관장하여 왕이 제후국을 안정시키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춘관·하관·추관·동관은 각각 예(禮), 정전(政典), 금령(禁令), 백공(百工)을 관장한다.³³⁾

전병훈은 이러한 『주례』의 내용이 사뭇 방대하기에, 「정신철학」 편에서 “『주례』의 제도를 다 열거하기 어렵다.”³⁴⁾라고 말한다. 그는 『주례』 내용 가운데 학교 교육, 인재 선발, 관직 등급 등을 거론하는데,³⁵⁾ 이 중 주공의 예치로서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례』, 「지관사도」의 지방행정 제도 관련 내용이다.

「지관사도」에서는 도비(都鄙), 향수(鄉遂) 제도를 골간으로 한 지방행정 제도를 기술하고 있다. 향(鄉)의 편제는 다섯 가(家)를 비(比), 다섯 비를 여(閭), 네 여를 족(族), 다섯 족을 당(黨), 다섯 당을 주(州), 다섯 주를 향(鄉)으로 삼고, 각각에 비장(比長), 여서(閭胥), 당정(黨正), 주장(州長), 향대부(鄉大夫)를 우두머리로 삼으며, 수(遂)제는 향제와 유사하게 린(隣)·리(里)·찬(鄣)·비(鄙)·현(縣)·수(遂)를 구성하고 각각에 우두머리를 뽑는다. 지방관의 주요 임무는 향수를 막론하고 백성들의 호적, 토지, 부세, 요역, 금지령, 소송, 풍속 등을 관리한다.³⁶⁾ 일례로 향(鄉)에서 지방관은 육덕(六德)·육행(六行)·육예(六藝) 3가지 일로 백성들을 가르쳐 인재를 추천하고,

32) 주지하듯이 『주례』는 본래 「천관총제」 「지관사도」 「춘관총백」 「하관사마」 「추관사구」 「동관사공」 6편으로 구성되었지만, 「동관사공」은 일찍이 사라져 서한시대에 「동관고공기」로 보완되었다.

33) 『주례』 체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정현 주, 가공언 소, 김용천, 박예경 역주, 위의 책, 21~34쪽, 김인규, 2006. 「『주례』의 체제와 유교이념」, 『퇴계학논총』 28. 166~169쪽 참조.

34) 「政治哲學」, 「제12장」, 「周禮之制度, 難以盡舉」

35) 「第十章. 學校教育實興之制哲理」, 「第十二章. 周禮任官之制哲理」 등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36) 『周禮』, 「地官司徒」 편., 이준영 해역. 2002. 『주례』, 자유문고. 116~216쪽., 장동우, 2006. 「왕권과 예치에 대한 『주례』의 문제의식」, 『동방학지』 133. 355쪽 참조.

20세기 초 조선 지식인의 예치론(禮治論): 전병훈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불효(不孝)·불목(不睦)·불인(不嫻)·부제(不弟)·불임(不任)·불훈(不恤)·조언(造言)·난민(亂民) 등의 8가지 일에 대해 형벌을 내려 백성들을 규찰한다.³⁷⁾

전병훈은 제9장('주공이 예치로 형벌을 40년 동안 쓰지 않은 철리')에서 예란 시대에 맞게 변통하여 활용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지관사도」의 지방행정 제도 내용을 활용한 '예치'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무릇 나라의 제도는 반드시 그 큰 뜻을 따르되 시의(時宜)를 참작해야 한다. 연후에 걸림 없이 시행하고 세상을 무량하게 구제할 수 있다. 이것이 변통(變通)하고 성인이 시중(時中)을 귀하게 여기는 연유이다. 내가 완성된 제도에 의거해 조별 사례를 분명히 한다. 육덕·육행·육예, 수신제가·예속상고·공익상면 등을 일으켜 장려의 조목으로 세운다. 경계해야 할 과실과 죄악은 불효, 부제, 불근실업, 횡타, 패란, 범법 등의 죄를 조목으로 세운다. 바·여·죽·당·향에서 매월 식망에 일반인들을 모아 집회를 열고, 부로신사(父老紳士)가 규범에 따라 타이르고 가르치고 관찰하고 금지시킨다. 만약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에 보고해서 다스린다. 이를 행해 반년이면 인민들로 하여금 소송이 없게 하는 정치의 효과를 볼 수 있다.³⁸⁾

예치는 전통 신분제 사회의 정치제도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 문물과 정치사상이 전해지던 시기 예치는 당대 신지식인들에게는 바뀌어야 할 구시대 정치제도라 여겨졌을 것이다. 전병훈 역시 “시류에 급급한 지식인이 만일 예치의 설을 들으면 노서생의 으레 그런 얘기라고 여길 것”이라며 신지식인들의 반응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더불어 기존의 “노서생과 케케묵은 유생들이 비록 예치를 말하나 그 조리와 규모를 알지 못하”기에 신학의 바움을 면치 못한다고 인정한다.³⁹⁾

37) 『周禮』, 「地官司徒」, 「大司徒」조. 이준영 해역. 2002. 『주례』, 자유문고. 131~132쪽.

38) 「정치철학」, '9장', “凡爲邦制度, 必也師其大旨, 而參合時宜, 然後可以行之無礙濟世無量矣, 此所以變通, 而聖之時中者爲可貴也. 余依成制, 條明事例, 舉此六德·六行·六藝·修身齊家·禮俗相交·公益相勉等, 立爲獎勵之目, 如過惡可戒者, 不孝·不悌·不勤實業·荒惰悖亂·犯法之罪, 立作條目. 自比閭族黨鄉, 每月朔望, 齊會民人, 父老紳士, 依規則諭之教之, 察之禁之. 猶有不遵者, 報官而治之. 是行之半年, 可見使民無訟之政效矣.”

이 때문에 그는 예치의 제도는 시대에 합당하게 변해야 하며, 그것이 “성인이 시중을 귀하게 여기는 연유”라고 강조한다.

이에 전병훈은 「정치철학」 제9장에서 『주례』의 지방행정 제도 내용에 토대를 둔 ‘예치’의 구체적 사항을 제시한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바·여·족·당·향에서 지방관이 매월 삭망에 일반인들을 모아 집회를 열어 도덕 규범을 가르치고 제시하는 『주례』의 ‘독법⁴⁰⁾ 규칙’의 사례와 같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수도에서부터 성(省), 주(州), 현(縣) 그리고 말단의 향(巷)에 이르기까지 지방제도를 세우고, 선출을 통해 지방관을 세워 독법 규칙의 일을 관장하게 한다.[①시설임목(施設任目)] 각 지방에서는 정부가 반포한 덕행과 과오의 조목이 기록된 홀기(笏記)를 낭독하여 덕행과 도의는 서로 권면하고 과오와 범죄는 경계하게 한다.[②홀기(笏記)] 그리고 과오를 범한 자는 공정하게 법 집행을 진행하여 죄과에 따라 상·중·하의 벌을 집행한다. 지방관은 향촌 지방의 예치의 실상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예치를 근면성실하게 집행하여 소송이 없어지고 형벌을 사용치 않는 지방관에게 상을 내려 장려하고 승진시킨다.[③거행상벌(擧行賞罰)]⁴¹⁾

전병훈이 예치의 실사제로 제시한 내용은 주나라 때 향촌 지방에서 행해지는 ‘독법 규칙’을 ‘시설임목’ ‘홀기’ ‘거행상벌’ 세 방면에 걸쳐 총 9조 내용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가 제시한 ‘독법 규칙’으로서 예치는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도덕 정치를 펼치기 위한 것이다. 그는 학교 교육을 통하지 않고 인민들에게 덕

39) 「政治哲學」, 「제9장」, “舊時之士, 如聞禮治之說, 則指爲老生常談. 有是哉! 老生宿儒者, 雖言禮治, 而不知其條理規模焉, 則安得免新學之譏笑哉? 余攷周禮本章約券條例, 不過十餘目, 爲讀法之規也.”

40) 독법(讀法)은 ‘주(周)나라에서 매년 정월에 세시에 따른 절일이나 길일을 선택하여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마을의 장(州長) 또는 학교의 장(黨正)이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령을 읽어 들려주던 제도로, 관(官)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새로 만들어지거나 고쳐진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던 방법’이다. 조선 세종 시기에 ‘사형죄’ 시행 관련하여 법 대신 독법 규칙에 대해 살펴보고 하기도 했다. ‘독법’과 관련하여 『세종실록』에서는 세종 21년 11월 13일에 사형수를 처결한 이후 세종이 승지들에게 ‘독법’의 조문을 살펴라고 말한 구절이 보인다. ‘독법’과 『세종실록』 기록 관련하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편,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10쪽 참조.

41) 전병훈 저. 1983.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270~278쪽.

의 교화를 펼치는 데에는 이러한 독법 규칙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이것이 서양의 지방자치제와 서로 표리가 된다고 여긴다.⁴²⁾ 그런데 전병훈이 제시한 ‘예치’에서 주목할 점은 그 속에 죄과에 대한 벌을 집행하는 형벌 제도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주관(周官)의 이런 제도는 참으로 백성을 가르쳐서 날로 선하게 하는 것으로, 자연스레 죄를 멀리하고 지극한 덕을 융성하게 하려는 뜻이다. 이름 지어 ‘독법’인데, 그 금하는 제도와 여러 조문은 또한 모두 법률에서 마땅히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치’라고 말하는 것은 덕행과 도예(道藝)를 장려해 사람마다 감화하여 형벌을 쓰지 않고 소송이 없이 마음으로 열복하여 진실로 승복함에 이른 것이니, 법률로 능히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공 예치의 규제를 높이는 것이다.⁴³⁾

일반적으로 ‘예치’는 ‘법치’와 대비되는 것으로 형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예’는 사회적 관습과 인간의 본성에서 연유한 도덕규범의 총체로서, 예에 의한 통치 즉 ‘예치’는 도덕에 의한 통치로 이해되며, 법에 의한 통치와는 전혀 별개의 정치 형태로 간주된다. 하지만 전통시기에 예는 도덕규범으로서 성격뿐 아니라 강제규범으로서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 예는 통치계급 내부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뿐 아니라, 각 계층간의 신분과 특권 및 재산상속 제도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서민 계층의 일상생활까지 규율하는 행위규범의 성격을 지닌다. 예를 어길 때에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과 처벌이 뒤따르기도 한다. 이 점에서 ‘예’는 ‘법’과 양립 불가하거나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적 성격을 지니고 강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⁴⁴⁾

42) 「政治哲學」, 「제9장」, “凡學校教育之外, 欲行無民不教, 無遠不暨之德化者, 將舍此而奚以哉? 明眼人於聖人至德至教之事, 可自得之, 可自豁然矣. 烏乎至哉! (此云官者, 今則地方官也. 若如西人自治制, 則政府之派任委員, 即行地方讀法官政矣.)”

43) 「정치철학」 '9장', “周官此制, 眞個是教民日遷善, 而自然遠罪之至德隆意也. 名之日讀法, 而其禁制諸條, 亦皆法律之當繩者. 然余以謂禮治者, 德行道藝之勸獎而人人感化, 以致刑措無訟之心悅誠服者, 則非法律之能過問者. 故尊之以周公禮治之規制也.”

특히 『주례』에 담긴 예치의 내용은 백성을 가르치고 기르며 다스리는 교민(敎民), 양민(養民), 치민(治民) 등의 민본사상과 함께 법 개념이 내포된 ‘예법(禮法)’ 사상이 담겨 있다.⁴⁵⁾ 전병훈이 활용한 『주례』의 독법 규칙 관련 내용은 ‘예법’으로서 ‘예치’의 내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다만 ‘예법’으로서 ‘예치’ 개념은 중형주의(重刑主義)에 바탕하여 통치 권력을 유지하는 고대 법가의 ‘법치’와 근본적으로 차이를 지닌다. 전통시기 유가의 예치는 도덕적 원칙 혹은 인간의 양심에서 벗어난 법은 법이 아니라 보며 실정법은 도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자연법주의에 바탕한다. 반면 법가의 법치는 법과 도덕의 엄격한 분리의 입장에서 악법도 법이라 여기는 법실증주의에 입각한다. 도덕을 실정법보다 우위에 놓는 유가의 예치는 자연스레 지도자의 도덕적 감화력에 의해 백성들을 모으고 교화시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덕치’로 연결된다. 이는 법가의 법치가 가벼운 범죄에도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군주에 복종하게 하는 공포정치와 극명한 차이를 지닌다.⁴⁶⁾

전병훈이 형벌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주례』의 독법 규칙 내용을 제시한 것은, 형벌을 통해 공권력에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덕행과 도예를 장려해 사람마다 감화하여 형벌을 쓰지 않고 소송이 없이 마음으로 열복하여 진실로 승복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형벌의 사용은 형벌을 쓰지 않는 것을 기약하기 위함이다. 전병훈은 “성인의 정치는 교화에 매진했으며, 부득이할 때만 형벌을 사용했다. 그 지혜를 다하고, 그 충심과 사랑을 다해서 반드시 사형을 완화한다. 형벌을 가하는 것은,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마침내 형벌을 폐지해 쓰지 않는 지극한 정치에 이르게 된다.”⁴⁷⁾라고 강조한다.

44) 도덕 규범과 강제 규범으로서 성격을 지닌 ‘예’의 특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승환, 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 출판부, 169~177쪽 참조.

45) 저우허 지음, 노인숙 옮김. 2021. 『예학을 말하다』, 삼화. 120~131쪽.

46) 이승환, 위의 책(1998), 16~24쪽, 177~184쪽 참조.

47) 『政治哲學』, ‘제11장’, “聖人致治, 克盡教化, 至于不得已而用刑, 則悉其聰明, 盡其忠愛, 必以緩死, 刑期于無刑, 故必至刑措不用之至治也.” 제11장은 제목 자체가 “형벌로 가르침을 보조하고,

형벌을 포함한 ‘예치’는 본질적으로 도덕 정치에 의해 풍속이 자연스럽게 변화하여 형벌을 쓰지 않는 사회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한다. 사람들이 중형주의에 의해 마지못해 공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 교화에 의해 저절로 변화하여 사회 질서를 이룩하는 것을 지향한다. 공자는 일찍이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기는 하나 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바름에) 이를 것이다.”⁴⁸⁾라고 했다. 전병훈은 공자의 이 말이 바로 주공이 행한 예치의 뜻과 동일하다고 말한다.⁴⁹⁾ 결국 전병훈이 동아시아 예치의 사표로서 제시한 ‘주공의 예치’는 도덕적 교화를 통해 인민들이 저절로 도덕 질서를 지키는 사회, 소송도 없고 형벌도 쓰지 않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정치라 할 수 있다.

Ⅳ. 동서 조제(調劑), ‘공화 헌법의 예치’

『주례』는 유가의 예치를 보여주는 주요 문헌이지만, 그 속에는 상벌을 통해 군신들을 제어한다는 법가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주례』에 보이는 “비장(比長)은 각기 자기의 비(比)의 통치를 관장하며 다섯 가(家)가 서로 의탁하고 서로 화친하도록 한다. 죄가 있거나 기이하고 간사함이 있으면 (벌을) 서로 받도록 한다.”⁵⁰⁾와 같은 연좌제 내용은 법가적 영향을 받은 대표적 조항이다. 연좌제와 같은 다양한 법가적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례』는 교화(敎化)를 통한 예치의 구현이라는 왕도정치 이념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평가된다.⁵¹⁾

형벌은 형벌 없애기를 기약해 형조刑措에 이르는 철리(刑以弼敎, 刑期于無刑可致刑措哲理)이다.

48) 『論語』, 「爲政」, “導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導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49) 「政治哲學」, 「제14장」 「孔子論大同之至治」에서 전병훈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此章乃德禮敎民而感化之意, 與周公禮治之意, 同一其規也.”

50) 『周禮』, 「地官司徒」, 「比長」, “比長各掌其比之治, 五家相受相和親. 有臯奇衰則相及.”

51) 장동우. 2006. 「왕권과 예치에 대한 『주례』의 문제의식」, 『동방학지』 133, 361~369쪽.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5. 『한국 중세의 정치사상과 주례』, 해안, 35~43쪽.

전병훈은 『주례』, 「지관사도」의 ‘독법규칙’을 주공이 행한 예치의 주된 사례로 활용한다. 그 속에는 상벌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법가의 중형주의적 법치와는 다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도덕 질서를 지킴으로써 소송도 없고 형벌도 쓰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교 왕도정치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병훈은 유교의 왕도정치의 이념이 반영된 『주례』의 예치를 ‘주공의 예치’로 보고, 이를 동아시아의 정치의 사표이자 서양이 배워야 할 제도로 여긴다. 그가 제시한 예치는 상세 조목과 법규 등은 시대에 맞게 변용 가능하고, 형벌 제도를 통해서가 아닌 도덕 규범을 통해 인민들을 교화하여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치는 도덕 정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례』에 담긴 예치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전제군주정의 신분제 사회에서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주례』에서 통치자는 일국의 주인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전 권한을 행사하는 절대적 존재이며, 국왕 이하의 다양한 신분 계급을 적시하고, 각 신분 등급에 따른 봉지나 작위의 차이를 수록하고 있다. 비록 법가의 법치와 달리 유교 왕도정치의 구현, 혹은 성왕군주에 의한 교화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통시기 예치 시스템에서 예법 질서를 부여하는 인물은 통치자이고 인민은 군주의 통치 대상이다. 신분 등급에 바탕한 예치가 과연 인민 각각이 주권을 가진 평등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

이 지점에서 전통시기 예치에 대한 전병훈의 새로운 해석이 주목된다. 앞서 동아시아 정치에 대해 전병훈은 주공 이전 시기에는 동아시아의 정치가 찬연하게 행해졌지만, 공맹 시기 정치학은 이론적인 교훈으로만 제시되었고, 맹자 이후로는 정치학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겼음을 밝혔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명화된 덕치와 예치를 펼친 인물은 주공으로, 전병훈은 주공의 예치를 동아시아

정치철학의 사표로 여긴다는 것을 밝혔다. 전병훈은 이와 같이 요순부터 하은주 삼대에 찬연하게 행해지던 예치를 '공화 헌법의 예치'로 규정한다.

정치제도가 극히 완비되었다면, 훗날 이를 이은 통치자가 비록 현명치 않아도 단지 갖춰진 법규를 준수하여 또한 정치를 할 수 있다. 만약 그 반대라면 비록 현명한 통치자라도 좋은 정치를 펼치기 어렵다. 이것이 주나라 이후 3천 년간 우리 동아시아에서 최상의 정치를 보기 어려웠던 이유이다. 세상사를 논하는 지식인이 혹은 요·순과 (하·은·주) 삼대를 군주정치로 지목한다. 하지만 이는 요·순·주공이 모두 인민의 소리를 듣고 정치를 했으며, '공화 헌법의 예치'를 세워 만세의 도덕 문명을 계도한 입법자라는 것을 진실로 모르는 것이다. 장차 조목을 차례대로 거론할 것이기에 여기서는 상세히 덧붙이지 않는다. (요임금과 주나라 때에 '공화'와 '헌법'의 명칭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이미 시행되었다.)⁵²⁾

전병훈은 요순과 하은주 삼대에 행해지던 정치는 찬연했지만, 그 정치제도가 시스템으로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기에 주대 이후 정치가 쇠락하게 되었다고 여긴다.⁵³⁾ 더불어 당대 지식인들은 요·순과 하·은·주 삼대의 정치를 군주정치로 말하지만, 전병훈은 요·순·주공은 “도덕 문명을 계도한 입법자”로서 “인민의 소리를 듣고 정치를 했다”고 평가하며, 이 시기의 정치를 '공화 헌법의 예치'로 규정한다.

전병훈이 주공 이전의 정치를 '공화 헌법의 예치'로 규정한 것은 주공 이전까지

52) 「政治哲學」, '緒論', “雖然爲治之制度克善克備焉, 則後之繼治者, 人雖非賢, 而只遵守成規, 亦足以爲治也. 苟或反是, 則雖有賢者, 而難以致治. 此所以成周以降, 三千載間, 噫我東球, 未見至治者也. 論世之士, 或以堯舜三代, 指爲君主之治, 殊不知堯舜周公, 皆聽民爲政, 以立共和憲法之禮治, 啓萬世之道德文明之祖法者也. 將條舉編次, 故此不加詳焉. (堯周之時, 未有共和憲法之名, 而其實情則已行矣.)” 원문과 번역문의 굵은 글씨와 밑줄은 필자가 강조를 위해 표기한 것이다.

53) 이러한 시각은 현대에 유교의 민본주의와 현대 민주정치를 비교한 일부 연구자의 시각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유교의 민본정치와 현대 민주정치를 비교 검토한 이상익은 유교 민본정치가 추구한 이상은 현대 민주정치 이상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지만, 유교가 그 이상을 실현하는 데 실패한 까닭은 정치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 빈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유교 민본사상은 '통치자의 인격적 각성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유교는 '제도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이상 실현을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통치자를 각성하기 위한 경연 등이 이루어졌지만 그 효과는 결국 “군주의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입헌체제만 못했던 것”이다. 이상익, 2017. 「민주와 민본의 비교와 통섭을 위한 정치철학적 검토」, 『민본과 민주주의 개념적 통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357~358쪽.

의 정치가 민주정, 공화정, 입헌정에 부합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 말미의 말처럼, 전병훈은 요순, 하은주 삼대에 실질적으로 행해진 정치 내용을 볼 때, 공화, 민주, 입헌의 말은 없었지만 그러한 정치가 행해졌다고 본다. 그는 요순, 하은주 삼대에 “인민의 뜻을 위주로 행한” 정치는 ‘민주제’라 할 만하고, “천하를 공변된 것으로 여긴” 정치는 “공화의 기틀을 연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례』에서 나라에 일이 있을 때 서민 그리고 선비들과 이를 의논한 것은 “헌법의 기치를 먼저 내건 것”이라고 여긴다.⁵⁴⁾

이러한 시각 하에 전병훈은 고대 기록의 파편 속에 보이는 고대 정치철학의 내용을 공화주의, 민주주의, 입헌주의 사상과 연관시킨다. 그는 고대에 민의에 따라 나라를 개창한 것, 요순이 인민의 뜻에 따라 선양한 것, 나아가 하은주 삼대에 인민의 뜻에 따라 천하세습이 이루어진 것 등등이 ‘공화’와 ‘민주’의 제도를 행한 것이라 평가한다.⁵⁵⁾ 그리고 주공이 행한 예치는 “그 정치가 비록 ‘공화’의 명칭을 세우진 않았지만, 군주와 신하가 서로를 향해 읍하는 것은 지금의 공화·평등의 예법과 서로 부합”하는 것으로, “서민과 선비가 국사를 논의해 가부를 말하고 집정자가 그 의견을 듣고 판단해 정무를 집행”한 것은 “총통·행정·헌법의 제도”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 “그때 비록 ‘헌법’의 이름은 없었지만 사실상 주공이 이미 앞서 이를 시행했다”라고 평가한다.⁵⁶⁾

전병훈은 이렇듯 요순, 하은주 삼대에 공화, 민주, 입헌 정치가 행해졌다고 보고, 주공에 의해 정립된 고대의 ‘예치’를 ‘공화 헌법의 예치’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

54) 「政治哲學」, ‘緒論’, “惟東亞之政治制度, 自堯舜歷夏商而至周, 始乃粲然大備, 皆以民意爲主. 雖謂之民主制, 恐無不可也. … 溯究東西草創之世, 雖有君皇之名稱, 而罔非民主者. … 堯舜之相禪, 是公天下之心, 可謂共和開基者. … 如『周禮』, 國有大事, 則庶民議之, 士論之, 可謂憲法之先豎幟者.”

55) 이는 「정신철학」 제1장에서 제3장까지 내용에서 다루지고 있다. 전병훈 저. 1983.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253~256쪽.

56) 「政治哲學」, ‘제8장’, “此時此治, 雖未立共和之名稱, 然君臣之相向揖者, 可謂與今共和平等之禮相孚者也. 庶民士子, 論議國事, 以陳可否, 而秉軸者聽決行政, 則與今總統行政憲法之制, 何以異哉? 惟其時雖未有憲法之名, 而其實則可謂周公先已行之也.”

고 그는 아래 인용문의 내용처럼, 이 공화 헌법의 예치야말로 정전제, 군산제와 함께 동아시아 정치철학의 핵심이자 서구가 취해야 할 것으로, 도래할 미래의 태평시대의 정치철학을 위해 동서의 정치철학을 조제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핵심 요소라고 여긴다.

동양은 반드시 서양에서 취하는 게 또한 마땅치 않은가? 다만 서양은 일찍이 '정전'과 '예치'의 제도에 어두웠으니, 이는 동양에서 취해 한 화로에서 합해 아급할 수 있다. 이처럼 조제하면 세계의 정치가 장차 성스러움을 겸해 통일하는 데 이를 수 있다. 화평 대동하는 태평시대에 형벌을 사용치 않는 지극한 덕의 서광을 다시 보게 되면, 천지의 할 일을 다 마치리라."⁵⁷⁾

전병훈은 요·순, 하·주 삼대에 공화, 민주, 입헌 정치가 행해졌다고 보고, 고대의 예치를 '공화 헌법의 예치'로 새롭게 해석했다. 전병훈이 고대의 정치에 민주, 공화, 입헌의 요소가 있다고 본 것은 민의에 따라 행해졌다는 내용을 강하게 해석한 것이다. 그의 해석은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지닌 한계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교의 민본주의가 강조되던 시각과 유사하다. 하지만 최근 논의에서 지적되듯이, 인민을 근본으로 여기고[民本] 인민을 위하는[爲民] 민본주의 사상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것과 일면 부합하는 점이 있지만, 전통시기 민본주의에서 인민은 정치의 주체가 아닌 교화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⁵⁸⁾ 전병훈의 해석은 역사성에 바탕을 둔 이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57) 「政治哲學」, 「緒論」, “東必取西, 不亦宜乎? 惟西則尚味井田禮治之制, 此可以取東以合治一爐。如是調劑, 則宇內之政治, 將臻乎兼聖一統。和平大同之郅隆, 復見刑措不用, 至德之曙光, 天地能事畢矣! 烏乎!”

58) 민본과 민주에 대한 논의는 전병훈 당시 중국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자유민주주의가 지닌 한계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교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유교의 민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어 민본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더불어 민본주의가 지닌 한계점과 민주주의와의 차이점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형호 외. 2000. 『민본주의를 넘어서-동양의 민본사상과 새로운 공동체 모색』, 청계., 신정근 외. 2017. 『민본과 민주: 개념적 통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양일모. 2017. 『근대 중국의 민주 개념-민본

전병훈은 서구 정치철학에서 고대에서부터 당대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수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앞서 말했듯 주로 민권, 민주, 공화, 헌법, 지방자치, 삼권분립, 도덕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전병훈이 서양 정치철학 가운데 선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그는 공화주의, 민주주의, 입헌주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가져왔다.⁵⁹⁾ 그가 해석한 동아시아 고대 정치철학은 이러한 근대 서구 정치철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결과이다. 비판적 시각에서 보자면, 서구 근대의 정치사상을 수용하고 그러한 사상을 동아시아 전통에서 찾으려는 시도의 결과로 새롭게 재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병훈은 요·순과 하은주 삼대에 공화, 민주, 입헌 사상이 있다고 보고 이 시기 예치를 ‘공화 헌법의 예치’라 했지만, 오히려 ‘공화 헌법의 예치’는 서구 사상에 영향을 받아 재발견한 것이다. 전통 시기 ‘예치’는 동서의 정치철학을 조제할 때 들어가는 동아시아 정치의 핵심 요소이지만, 전병훈이 말한 ‘공화 헌법의 예치’는 서구 정치사상이 투영된 ‘동서 조제의 결과’로서 새롭게 해석된 ‘예치’라 할 수 있다.

전병훈의 ‘공화 헌법의 예치’는 동서 조제의 결과 새롭게 재발견된 것으로 전통 예치에 대한 일종의 창조적 변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렇게 창조적으로 변용된 예치에는 이제 기존의 전통시기 예치와 다른 새로운 의미가 담기게 된다고 생각한다. 『주례』에 담긴 예치는 본질적으로 전제군주정의 신분제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비록 예치가 교화(敎化)를 통한 왕도정치의 구현이라는 이상을 지니지만, 결국 통치자는 군주이며 인민은 통치를 받는 대상으로서 각 개인의 행동 양식은 ‘신분[分]’에 따라 질서 지워진다. 신분 등급에 바탕한 예치는 시민 각각

과 민주주의 간극」, 『중국지식』 9(9) 참조.

59) 전병훈이 공화 민주 입헌 등을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20세기 초 조선과 중국에서 입헌 공화제나 민주공화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이를 수용하고자 하던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20세기 초 중국과 조선에서 공화제 관련 논의는 윤대원. 2001. 「한말 일제 초기 정체론의 논의 과정과 민주공화제의 수용」, 『중국현대사연구』 12., 서희경. 2008.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기원」, 『시민과 세계』 14., 이영록. 2010.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법사학연구』 42., 박찬승. 20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돌베개., 장규식. 2018. 「3·1운동 이전 민주공화제의 수용과 확산」, 『한국사학사학보』 38. 등 참조.

이 주권을 가진 평등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기능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화주의와 입헌주의 관념이 부각된 ‘공화 헌법의 예치’에서는 전통 전제주의의 신분제 관점은 탈각될 수 있다.

전병훈이 제시한 ‘공화 헌법의 예치’에는 공화, 민주, 헌법의 이념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인민의 뜻에 따라 인민들 상호 계약에 의해 법적 절차가 규정된 예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예치에서는 신분 질서를 바탕으로 기능하는 예치의 의미는 사라지고, 주권을 가진 개개인의 사회적 합의와 담론을 통해 형성된 사회 질서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된다. 「정치철학」 제9장에서 제시한 ‘독법규칙’을 고려할 때, 전병훈이 강조한 『주례』 속의 ‘주공의 예치’는 여전히 신분제 사회의 전통 예치 관념의 자장 속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서구 정치철학을 수용하고 새롭게 정초한 ‘공화 헌법의 예치’는 도래할 미래의 새 시대의 정치철학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다.

V. 맺음말

전병훈은 서구 정치철학 서술을 마치고 총결론을 말하기에 앞서 “공화와 헌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밝은 식견을 가진 건 아니지만 소원이 세계통일정부에 있으므로 감히 9조로 흥내를 내본다”⁶⁰⁾라며 ‘세계통일공화정부헌법’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세계 대총통 선출, 사람의 도리를 존중하며 덕·예를 통한 교화 정치, 군축과 평화, 독립과 평등에 바탕한 통일중앙정부 건립, 도덕을 표준으로 삼는 법률, 정전제를 통한 토지공유와 경제 균등 수행, 그리고 사회복지 기구 설치 등 전병훈이 정치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⁶¹⁾ 이 가운데

60) 「政治哲學」, 「世界一統共和政府憲法」, “編者於共和憲法, 未有博攷明見, 而所願則在世界之一統政府, 故敢擬以九條.”

61) 전병훈 저. 1983.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338~340쪽.

제2조 “사람의 도리를 존중한다. 총통과 당국자들은 덕·예로 자신을 규율하고, 덕·예로 세상을 교화하며, 형벌은 형벌을 쓸 필요가 없기를 기약한다.”와 제7조 “법률은 도덕을 밖에서 제어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법률을 채용하되, 모두 도덕을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내용은 유교의 덕치·예치 관련 내용이다.⁶²⁾ 이는 전병훈이 도래할 새 시대의 미래 정치의 핵심 요소로 예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전병훈의 정치철학에서 ‘예치’가 지닌 위상은 이 책에 수록된 일부 인사들의 평에서도 드러난다.⁶³⁾ 당대 저명 인사의 평이 담긴 『정신철학통편』 서두의 「약부제 가평언서」에서 청말 양광총독(兩廣總督), 남양대신(南洋大臣) 등을 역임했던 정치가 장인준(張人駿, 1846~1927)은 전병훈에 대해 “학문이 공자를 계승하여 도에 조예가 깊으니, 예치와 형조의 논의는 항상 『주례』의 문명을 품었다.”라고 평했다. 저명한 사상가 강유위(康有爲)는 “대작을 삼가 읽으니, 정치를 말하며 필히 『주례』의 근본에 뿌리를 두고, 양생을 말하며 필히 도가의 대의와 심오함을 거론한다. 지금 정치가 혼란하고 물질이 조악한 가운데 존귀한 논의의 정수를 얻으니, 참으로 빈 골짜기에 발자욱 소리가 울리는 듯하다. 공경해 우러르길 그칠 수 없다.”라고 평했다.⁶⁴⁾ 그리고 『정신철학통편』 말미의 「부인허공문」에서 이 책의 출판

62) 「政治哲學」, 「世界一統共和政府憲法」, “二. 尊重人道. 總統及在位人員, 德禮律身, 德禮教化, 刑期于無刑.”, “七. 法律是道德之制之於外者, 採用世界最良法律, 咸以道德爲準.”

63) 참고로 『정신철학통편』은 출간 이후 당시 정계와 학계의 유명인사들에게 널리 읽히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강유위, 엄복 등 중국 명사 15인의 찬사가 수록된 「약부제가평언서(畧附諸家評言序)」(1919)와 중국과 한국 명사 72인의 찬사가 수록된 「제가제평집(諸家題評集)」(1925)의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 더불어 이 책은 당시 여러 나라에 배포되었고 또 일정한 영향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세계 각국에 얼마나 유포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만약 곳 이상의 전 세계 도서관 소장자료를 살필 수 있는 월드캣(<https://www.worldcat.org/>)을 검색해보면, 상당수 도서관에 『정신철학통편』이 소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대승, 위의 글(2022), 49~50쪽 참조.

64) 「畧附諸家評言序」, “張公人駿(號安圃, 前清翰林, 兩廣總督)曰, 靄霞傾蓋, 粹然有玉貌高世之風, 何如靖節肥遯? 學承鄒魯, 深造以道, 禮治刑措之議, 恒懷周官之文明.”, “康公有爲(號南海, 孔教會長)曰, 伏讀大著, 言政治則必根周禮之本, 言養生則必舉道家之大義微奧. 當今政治之惡, 物質之粗, 得尊論之精微, 眞空谷足音也, 敬仰不已. 又曰: 大地大同之後, 道術自大行而日新. 今未到其時也.”

허가를 당국에 신청했던 제자 우람전(于藍田)은 전병훈이 “천지의 도덕을 체득해 실행하는 것을 정곡으로 삼아 총괄”하면서도 “서양의 헌법과 과학으로 마땅히 우리의 결점을 보충할 것”을 촉구하고, “‘예치’를 통한 형벌축소, 군축 평화, 세상을 극락으로 만드는 덕정으로 그 책을 종결”되었다고 평가했다.⁶⁵⁾

이상의 평가는 당대 정치가, 사상가 그리고 전병훈의 제자 또한 전병훈의 정치철학의 요체를 ‘예치’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전병훈이 『정치철학』에서 제시한 예치는 크게 두 층위를 지닌다. 하나는 『주례』의 ‘독법규칙’을 사례로 제시한 ‘주공의 예치’이다. 전병훈의 정치철학의 맥락에서 ‘주공의 예치’는 시대에 따라 변통 가능한 ‘예법’으로서의 예치이며, 여기서 형벌은 사용하지 않음을 기약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왕군주의 교화(敎化)를 통한 풍속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유교 전통의 자장에 속해 있는 예치이다.

전병훈이 제시한 또 다른 층위의 예치는 ‘공화 헌법의 예치’다. 이는 전통적인 예치의 관념에 서구 정치철학적 요소가 결합된, 동서 조제의 결과 새롭게 해석된 예치다. 전병훈 자신의 철학적 시각에 바탕하여 창조적으로 변용된 ‘공화 헌법의 예치’는 민주와 공화의 이념이 부여된 만큼 전통 군주정 시기의 신분제 관념이 탈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화, 민주, 헌법의 가치가 부각된 새로운 예치는 인민들의 뜻과 인민들 상호 계약에 따라 법적 절차가 규정된 예치로서, 주권을 가진 개개인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사회 질서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병훈이 동양과 서양의 정치철학적 시각을 조제하여 새롭게 제기한 ‘공화 헌법의 예치’는, 신분 질서에 따른 규범으로서의 전통 예치 관념을 벗어나, 주권을 가진 개개인의 합의에 의한 도덕 공동체 운영 규범이라는 새로운 관념의 예치를

65) 「附認許公文」, “且西學以利益解道德, 而公德私德之訟案未決者, 悉一一辨破, 總以體行天地之道德爲正鵠, 開卷自可一目瞭然. 然其憲法科學, 當補吾之缺點者, 亦嘗拳拳致意焉. 矧以禮治刑措寢兵輯和·躋世極樂之德政終其篇.”

향하고 있다. 이는 개인주의의 범람으로 오히려 개인이 소외되는 현대 법치국가 사회에 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개인이 소외되지 않는 도덕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노정하고 있는 예치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66) 본 연구는 20세기 초 서구 지식이 들어올 때 조선 유학자인 전병훈의 예치론을 분석하고 그의 예치론의 의미와 의의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전병훈의 예치가 현대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수행하지 않았다. 전병훈 예치의 현대적 가능성을 심도 깊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 체제에서 예치의 실행 여부와 현대 정치철학과의 접점 모색 등이 구체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탐색은 향후 연구자들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Abstract

**The Theory of "Propriety-politics" of Joseon
Intellectual in the Early 20th Century: Focusing on
Jeon Byunghoon's "Political Philosophy"**

HK Research Professor, Daeseung Lee.

(Jenju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perspective of Joseon intellectuals on "Propriety-politics" at a time when East and West thoughts were in contact in the early 20th century, focusing on Jeon Byung-hoon's political philosophy. Jeon Byung-hoon was a Joseon intellectual who worked in Joseon and Beij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Jeon Byung-hoon, who was active in Beijing during the Northern Warlords period in China, wrote *General Edition of Mental Philosophy* in 1920, which combines the ideas of the East and West, mental, psychological,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In the "Political Philosophy" section, he deals with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East and West, where propriety-politics is mentioned as the core of East Asian political philosophy, which is a political system that the West should emulate and have values to carry out in the coming future. In Jeon Byung-hoon's political philosophy, the Propriety-politics differs by two levels. One is the 'Propriety-politics of Zhougong 周公' based on the case of *The Rituals of Zhou* (*Zhouli* 周禮). This is a propriety-politics tha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s, and it is a deposit that belongs to the field of

Confucian tradition as it aims to change the customs through the edification of the Holy Prince. The other is ‘Propriety-politics of Republican Constitution.’ This is a newly interpreted propriety-politics as a result of the preparation of political philosophy thoughts of East and West, and the value of republican, democracy, and constitution is given. The propriety-politics newly interpreted by Jeon Byung-hoon is a propriety-politics that stipulates legal procedures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eople and mutual contracts of the people, and can be evaluated as having meaning as a social order norm formed through social consensus of individuals with sovereignty.

Key words: Jeon Byunghoon, *General Edition of Mental Philosophy* (*Jeongshin Cheolhak Tongpeon* 精神哲學通編), Political Philosophy, the preparation of the East and West, Propriety-politics (禮治), Propriety-politics of the politics of the republican constitution

논문투고일: 2023.01.04. 심사종료일: 2023.02.13. 게재확정일: 2023.02.13.
--

참고 문헌

원전류

전병훈 저. 1983.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예기』

『의례』

『주례』

국내 논저류

김성환. 2016. 「예치는 민주·공화와 만날 수 있는가?-요·순·삼대의 예치에 대한 전병훈 정치철학의 독법」, 『동북아 문화연구』 47(1).

김성환. 2016. 『우주의 정오』, 소나무.

김인규. 2006. 「『주례』의 체제와 유교이념」, 『퇴계학논총』 28.

김형효 외. 2000. 『민본주의를 넘어서』, 청계.

류재화 쓰고 엮음, 장현근 옮김. 2019. 『중국정치사상사』 1, 글항아리.

박찬승. 20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돌베개.

서희경. 2008.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기원」, 『시민과 세계』 14.

소진형. 2022. 「조선 지식인의 서양 번역서 독해방식: 전병훈 『정신철학통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7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편.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신정근 외. 2017. 『민본과 민주주의 개념적 통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양일모. 2017. 「근대 중국의 민주 개념-민본과 민주주의 간극」, 『중국지식』 9(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5. 『한국 중세의 정치사상과 주례』, 혜안.

윤대원. 2001. 「한말 일제 초기 정체론의 논의 과정과 민주공화제의 수용」, 『중국현대사연구』 12.

이경배 외. 2022. 『동서양의 인간이해』, 흐름.

이승환. 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 출판부.

이영록. 2010.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법사학연구』 42.

이준영 해역. 2002. 『주례』, 자유문고.

임채우. 2021. 『완역 정신철학통편』, 인월담.

장규식. 2018. 「3·1운동 이전 민주공화제의 수용과 확산」, 『한국사학사학보』 38.

장동우. 2006. 「왕권과 예치에 대한 『주례』의 문제의식」, 『동방학지』 133, 연세대학

교 국학연구원.

정현 주, 가공언 소, 김용천, 박예경 역주. 2021. 『역주 주례주소』 1, 전통문화연구회.

최경옥. 2001. 「예 이념의 전개」, 『인문과학논총』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4. 『유교의 예와 현대적 해석』, 청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7. 『유교의 예치이념과 조선』, 청계.

한형조 외 지음. 2001. 『전통 예교와 시민 윤리』, 청계.

황경식. 2017. 『법치사회와 예치국가』, 철학과 현실사.